

의안번호	2219278
의 퇴 인	이종배 의원
회 답 일	2026.8.31.
추계번호	26B287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9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제5항 신설)	의무규정
2	안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9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제4항 신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2	안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 상세 사유

- 현행법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 이상 180일 미만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여부와 사용자 수 및 사용기간, 이들의 평균임금 등에 의해 결정되나, 개정안의 시행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수급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여부와 이들의 사용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개정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제22192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